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이하 “**실천사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이하 “**당사**”라 한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총칭하여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서 정한 준수사항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본원칙)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3 조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1. 위원장 : 구매 담당 임원
 2. 위 원 : 유관 부서 팀장 또는 부장급 직원 3인
 3. 간 사 : 구매 담당 임원이 지정한 자
- ②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업체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금액 | 직전사업년도 대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 |
|-----------------|-------------------------------------|
| 10억원 미만 | 5%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 |
| 20억원 이상 | 1% |

-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여부
 2.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여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여부
 5.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6.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여부
-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⑥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⑦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문서 관리)

내부 심의위원회 간사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지침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